

대학 기술창업 활성화사업 시행

대학의 우수연구성과와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유망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의 관내 설립 및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「대학 기술창업 활성화사업」을 시행합니다.

2024년 2월 19일

울산과학기술원

1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4년 공고일 ~ 12월
- 지원대상: 울산 소재 대학의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i)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울산 관내 창업 예정 교원이나 석·박과정, 졸업생 또는 ii) 교원이나 석·박과정, 졸업생이 3년 미만 울산 관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
- 지원내용: 시제품제작, 산업재산권 취득 등 사업화자금 41,000천원 내외, 전문기관 컨설팅(BM 및 IR수립), 특허 포트폴리오, 투자 컨설팅 지원 등

2 지원방안

- 지원내용

구분	세부내용	지원금	지원대상
사업화 자금	· 시제품제작, 기술정보활동(자문·용역) · 산업재산권 취득, 홍보/마케팅 등을 위한 국내외출장 등 기업 운용자금	기업별 41,000천원 내외	7개사
전문기관 컨설팅	· 비즈니스모델(BM)/기업홍보자료(IR) 기획 · 투자 컨설팅 기획(3개사 선정) · 특허 포트폴리오 작성(2개사 선정) · 후속투자유치 연계 (민간 투자회사 등 별도 미팅 및 협의)	-	
기타 지원사항	· 기업 설립 법무행정 비용지원 · 기업 운영 멘토링/네트워킹 지원/성과보고회 · 후속투자유치 연계 지원	-	

3

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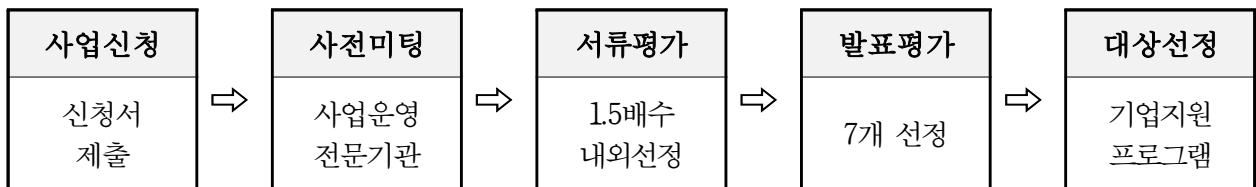
- 울산 소재 대학의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i)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울산 관내 창업 예정 교원이나 석·박과정, 졸업생 또는 ii) 교원이나 석·박과정, 졸업생이 3년 미만 울산 관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

- ※ 기술의 활용이란 울산 소재 대학 소유의 지식재산권(노하우 단독 제외)을 이용한 창업을 말함
- ※ 본 지원대상에서의 창업은 반드시 해당 교원이나 석·박과정 학생이 설립(예정)기업의 대표 등 등기임원(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)에 취임하거나 제3자가 설립한 중소기업/벤처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30%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
- ※ 석·박과정 학생의 경우는 휴학생을 포함하며, 교원의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해당 교원이 대표나 등기임원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박탈하지 않음
- ※ 공고의 일자와 법인이 등기된 날(등기부등본)을 대비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함
- ※ 울산 관내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본사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

4

선정절차

- 선정절차



- * 사업 신청 전 사전미팅 가능('24.03월 이후 가능, 대학 담당자에게 문의)

- 평가기준

서류평가	발표평가	비고
기술내용, 사업화 유망성, 사업화 자금계획 등	기술성, 시장성, 기술책임자 역량 등	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

- * 상기 절차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

5

신청서 접수 및 일정

접수기간 및 선정일정

구분	신청서접수	사전미팅	서류평가결과통보	발표평가	최종선정
1	'24.03.15.(금) 18:00까지	'24.03.04.(월) ~ 03.15.(금)	'24.03.22.(금)	'24.04.03.(수)	'24.04.05.(금)
2	'24.04.19.(금) 18:00까지	'24.04.01.(월) ~ 04.19.(금)	'24.04.26.(금)	'24.05.08.(수)	'24.05.10.(금)
3	'24.05.17.(금) 18:00까지	'24.05.01.(수) ~ 05.17.(금)	'24.05.24.(금)	'24.06.05.(수)	'24.06.07.(금)

- * 지원대상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미달 시에는 추가 선정 예정
- * 상기 일자 및 절차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
- * 서류평가 결과는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발표평가의 안내사항과 함께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통보 예정
- * 선정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, 선정대상 중 선정포기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선정 취소될 경우 선정예비후보자를 최종 선정할 수 있음

접수처(E-mail 접수 및 마감 당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- 울산과학기술원: 기술사업화팀 백현아 (Tel.052-217-1364, hadong@unist.ac.kr)

제출서류: 사전미팅신청서(별지양식 1호) 및 사업신청서(별지양식 2호)

6

향후 일정

신규창업 법인설립 (* 2024.09.30.이전까지)

- 법인설립 법무행정 비용지원

선정기업 지원

- 사업화 자금 지원 (* 사업 선정일부터 ~ 2024.11.30.까지)
- 전문기관 컨설팅 및 기타 후속투자유치 연계 지원(민간 투자회사 별도 미팅 및 협의) 등 기타 지원

* 상기 일정은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음

7

유의 사항

사업화 자금 지원 및 환수

- 사업화 자금은 법인설립 이후 별도 신청을 통해 법인소유 사업비 전용 계좌를

발급하여 해당 사업비 전용 계좌로 지급 요청

- * 제출서류: 통장사본,사업자등록증,계좌입금신청서(별지양식 7호), 창업기업 사업비 지급요청서(별지양식6호)
- 지원금의 경우 자부담으로 먼저 과제를 수행하고 지원금 신청시 검토 후 사후지급
- 사업비의 경우 공급가액에 한하여 지급 가능
(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는 지원 불가)
- 지원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계좌잔액은 최초 0원으로 하며,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는 본 사업 용도로만 사용

* 단, 사업비 선지출 대응자금 및 부가가치세 대응자금은 본 사업 용도로 인정함

□ 사업화 자금 집행 가이드라인

- 급여, 자본금, 사무공간 임대료, 제세공과금(부가가치세, 법인세, 전기요금, 상수도비 등), 기술이전료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함
- 설립기업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화 자금 집행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
- 사업비 집행은 기업명의로 법인카드, (세금)계산서 등을 통하여 거래함을 원칙으로 함

<표 1> 사업화자금 편성

세부항목	자금 재원별 사용 상세내용	상/하한액
시제품 제작비	- 시제품 제작 관련 용역비 - 시제품 제작 관련 시험료 및 재료비 - 시제품 제작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용비 - 제품 디자인 및 컨셉 개발 관련 비용 등	제한없음
기술정보 활동비	- 경영·기술 관련 애로사항 및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비 - 초기창업 및 기업운영 관련 참고문헌(자료/서적)구입비 등 * 전문가 자문비는 원천징수를 필함	
산업재산권 취득비	-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관련 비용 * 출원인(최종권리권자)이 기업명의로의 경우 지원 가능 (공동명의로의 경우 비율 지원) * 사업 선정일 이후 출원인(최종권리권자) 기업명의로 출원 및 등록에 한하여 인정 - 기업 및 상용화 제품 인증 비용 등 * 제품 출시·판매를 위한 각종 인증관련 비용 * 기업인증(ISO, 벤처기업 인증 등)	
지급수수료	- 사업 및 시제품제작 등에 직접 관련된 각종 수수료 등 * 나라장터 입찰 수수료, 조달청 인증서 발급, 기업 공인인증서 발급비용, 화학물질 신고비용 등	
홍보 및 마케팅비	- 국내외 전시회, 박람회 등 참석 참가비 * 국외 전시회 항공료, 숙박비 등 체재비 집행 불가 - 기업 및 제품 홍보/마케팅비 * 브로슈어, 카탈로그, 홈페이지, 기념품 제작관련 비용 등 - 시장조사 및 분석 등 시장정보 수집관련 비용 등	
출장비/ 소모품비 및 회의비	- 사업화 업무관련 국내외출장 비용 등 - 기업운영 사무용품(필기도구, 프린터 토너 등) 구입비 - 업무협의 관련 회의비 등 * 출장비 - 교통비 실비만 지급(일비, 식비 등 지급불가) * 항공 및 철도 이용 시 특실 지원 불가 - 국외출장 시 사전에 주관기관 적정성 검토 후 집행 * 소모품비 - 총액 50만원 이하, 사무기기(PC,프린터 등) 구입에는 사용 불가 * 회의비 - 총액 50만원 이하, 1인당 지급기준액은 30,000원(v.a.t포함) - 평일 심야시간(23시~06시), 주말 /공휴일 집행불가	총 사업비의 5%이하 (총 2,050,000원 가능)

- 세부항목 간 전용은 공문을 통한 주관기관 승인사항[별지 제16호]이며 세부항목 내 전용은 증빙서류(내부결재문 등)를 갖추어 선정기업이 자체 처리하도록 함
- 사업화자금의 잔액 및 발생이자는 해당 사업 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사업화자금 집행 시 적격증빙 영수증(법인카드 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에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사업화자금으로 집행 인정함
 - 단, 부가가치세 구분 표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

있는 경우가 있기에 공급가액만을 사업화자금으로 집행 인정함

- 선정기업은 별도의 세무컨설팅(사업비 집행가능)을 통하여 공급가액을 구분하는 것을 권장하며, 향후 세무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가능

□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

- 선정기업은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사업종료일까지 실적보고서(사업화 자금 사용완료 보고서[별지 제11호] 및 사업비 정산서[별지 제13호])를 제출하여야 함. 이 때,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선정기업은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화 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
- 실적보고서 중 사업화 자금 사용완료 보고서[별지 제11호]는 사진을 제외하고 총 내용이 5매 이상 되도록 작성
- 선정기업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장실태조사 및 성과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성과점검 또는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방문, 성과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함

□ 지원 사업비 환수대상

- 선정기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- 신청 또는 지원금 청구 시의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
 -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
 - 선정 예비창업자가 2024년 9월 30일까지 법인설립을 하지 못한 경우
 - 공문서로 요구한 자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
 - 대표이사, 대주주의 횡령·배임·분식회계 등의 범죄행위, 불공정거래,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, 세금포탈 등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
 - 타 법인과의 인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의 변화로 당해법인의 경영활동의 연속성이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거래 관계의 불투명, 지출의 부적정, 경영세습 상태 불량 등 투명한 기업 경영에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
 - 선정 후 3년간 울산에 본점 또는 지점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

단, 폐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.

- 그 밖에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붙임: 별지양식 각 1부. 끝.